

의안번호	2205063
의 퇴 인	박수민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8.
추계번호	24F4651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산업기술 등 포함

【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35조 (지식재산권 보호)	○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,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5조 (지식재산권 보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방위산업기술,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관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
 - 「관세법」 (이하 “법”) 제235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,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유치할 수 있음
 - 현재 법 제235조 따라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, 저작권등(저작권 및 저작인접권), 품종보호권, 지리적표시권등(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의 지리적표시), 특허권, 디자인권으로 총 6개

[표 1]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현황: 2019~2023년

(단위: 건, 억원)

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건수	수입	267	174	85	97	95
	수출	6	2	2	2	2
법칙 시가	수입	6,598	2,327	2,281	5,618	3,652
	수출	11	275	58	21	61
합계	건수	273	176	87	99	97
	금액	6,609	2,602	2,339	5,639	3,713

주: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포함될 수 있어 전체 단속사건 수와 개별 합계가 다를 수 있음
자료: 관세청

○ 개정안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관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
- 개정안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에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에 따른 방위산업기술¹⁾,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기술²⁾ 및 「무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비밀³⁾을 추가하고 이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함

□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해지는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 및 관세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, 향후 개정안에 따른 물품 중 어떤 품목이 얼마나 수입금지 될지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개별법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산업기술·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물품 수출입을 일부 규제하고 있음
 -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, 최근 5년(2019~2023년)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사건은 총 96건

1)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 기술로, 현재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 기술이 포함(「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」)

2) 국가핵심기술, 첨단기술, 신기술, 새로운 전력기술, 새로운 건설기술, 보건신기술, 핵심 뿌리기술 등

3)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,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

[표 2]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: 2019~2023년

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건수	14	17	22	20	23

자료: 국가정보원

- 더불어,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도 지식재산권침해물품⁴⁾에 포함하고 이를 수출입 하는 경우 불공정무역행위로 보고 있음

[표 3]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결과: 1987~2022년

	조사신청	조사개시			조사불개시
		조사중	제재조치	무혐의	
건수	10	1	3	3	3

자료: 무역위원회 홈페이지

4)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(實用新案權)·디자인권·상표권·저작권·저작인접권(著作隣接權)·출판권,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**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**(이하 “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가.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
나.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문경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